

부산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4나561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4나5617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6. 18 선고 2022가단35365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진

변론 종결2024. 11. 8.

판결 선고2024. 12. 6.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4. 6. 18. 선고 2022가단353651 판결

주문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22. 9.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성립된 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C의 무자력

앞서 든 증거들, 제1심 법원의 Q단장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별다른 재산을 갖고 있지 않은 사실, 2022. 9. 5.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액은 71,147,962원 및 그중 24,206,310원에 대한 2020. 3. 18.부터 2022. 9. 5.까지 연 2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고, 그

외에도 C는 주식회사 I에 13,436,000원, J조합에 355,000원, K 주식회사에 2,462,000원, 1,954,000원, L 주식회사에 4,00,000원, M회사에 313,000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여부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4, 6 내지 9, 16, 17, 20 내지 22, 24 내지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등 망인의 공동상속인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하기로 협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의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는 망인의 장남으로, 망인 소유의 주택(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4층에서 망인과 망인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모친인 F와 함께 거주하였고, 망인이 2017년 7월경 뇌경색으로 입원하였다가 2017. 9. 26. 퇴원한 이후부터 망인의 진료비를 부담하면서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증세로 불편한 망인과 고령으로 몸이 불편한 F를 부양하고 간병하였다.

② 피고의 동생인 G, C는 경기도와 충남에 거주하였고, 생계의 어려움으로 피고가 홀로 망인과 F를 부양하였다.

③ 망인은 1993년부터 2021년까지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누수 공사대금을 부담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부 채무 15,000,000원도 피고의 월급으로 상환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유지에도 기여하였다.

④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와 같은 피고의 망인에 대한 지속적인 부양과 망인 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를 특별히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⑤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민법 제1008조의 2), 다른 공동상속인(F, C, G)은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망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도 하였으며, 망인도 생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와 같이 기여한 피고에게 주기를 원하였고, 다른 공동상속인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이 사건 주택에서 F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협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⑥ 위와 같이 피고의 기여를 인정하여 공동상속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합의한 점, C는 상속포기를 통해서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점, C뿐 아니라 F, G도 상속재산을 분배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C와 피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망인과 망인의 재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산정한 구체적 상속분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취득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⑦ 따라서 C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지정상속분 또는 공동상속인들이 정한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재산분할 결과가 C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⑧ 설령 피고의 기여분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상속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있던 구 주택은 F가 미용실을 운영하여 마련한 점, F가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하면, F의 기여분도 인정되어야 하는데, 결국 피고의 기여분과 F의 기여분을 모두 고려하고, 여기에 C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 36,254,941원(= 2021. 8. 10. 특별수익한 20,000,000원을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20,254,941원 + 2022. 5. 16. 및 같은 달 19. 증여받은 16,000,000원)을 공제하면, C는 구체적 상속분이 없게 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F와 함께 거주하면서 F를 계속 부양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공동상속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성호

판사박우중

판사이광영

별지